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8일 02시 08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	3

##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

2014.04.17 조회수 66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27
담당부서	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
상위법령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조례	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지방행정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2-11-14
규제시행/폐지일	2002-11-14
규제내용	제15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)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,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1. 사무실 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(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) 4.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시설 또는 장비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26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32 >

# Yeosu Web Contents

